

##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
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(독촉장)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7.

###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



- 건 명: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에 대한 공시송달
- 근 거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33조의3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- 공고기간: 2026. 7. 7. ~ 2026. 7. 22.(15일이상)
- 반환금 납부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(3층)에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사항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(Tel. 02-950-97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